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군인 자녀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의2).
-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 신설).
-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함(안 제17조 신설).

II. 검토의견

<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 관련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필요 >

- 안 제15조제1항은 군 매점의 이용대상이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재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군 매점 상품에 대한 명시적인 재판매 금지규정이 없어 일부 이용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판매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. 다만 개정안은 실제로 군 매점 이용자가 재판매행위를 했을 때 이를 벌금·과태료로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.

한편, 안 제15조제2항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 행 법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(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</u> <u>의 준수사항) ① 군 매점 등</u> <u>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은</u> <u>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</u> <u>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
○ 그런데, 대통령령 위임 규정인 안 제15조제2항은 다소 불필요한 측면이 있음. 하위법령은 일반적으로 법률만으로는 집행이 곤란한 경우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형식인데, 안 제15조제1항은 단순히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일 뿐이고 위반시 처벌 등의 후속적 집행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하위법령에의 구체화 필요성이 적음.

예컨대,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¹⁾를 보면,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.

또한, 법률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음.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헌법 제75조²⁾는 “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여 일반적·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으며, 헌법재판소는 수범자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가로 포괄위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³⁾.

1) < ‘준수사항’을 규정하면서도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입법례 >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5조(보호자의 준수사항)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서비스기관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「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(경호안전구역에서의 준수사항) 경호안전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관리, 검문·검색, 출입통제 등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경호안전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.

2) 「대한민국헌법」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.

3) “우리 헌법도 제75조에서 “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”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‘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’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.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

- 따라서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 제15조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- 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 - 현행법 제2조 정의규정⁴⁾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, 안 제15조 본문 중 “군인복지시설”을 “복지시설”로 수정함.
 - ‘시설을 이용을 하는 사람’을 뜻하는 일반적 용법⁵⁾를 고려하여 안 제15조 본문 중 “이용대상”을 “이용자”로 수정함.
 - 안 제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

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, ‘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’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,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·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,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·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“ **[헌법재판소 1998.7.16. 96헌바52]**

- 4)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3. “복지시설”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군인 자녀 기숙사
 - 나. 군 매점, 영내 주유소
 - 다. 복지회관,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
 - 라.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
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
- 5)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46조(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)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1. ~ 3. (생 략)
 - 「도서관법」 제46조(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)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1. ~ 3. (생 략)

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및 유사 입법례⁶⁾를 고려하여, “행사 등 사업의 실시에”를 “행사 등에 관하여”로 수정함.

<수 정 의 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5조(군인복지시설 이용 <u>대상</u> 의 준수사항) ① 군 매점 등 <u>군인 복지시설 이용대상</u> 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<u>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제15조(군인복지시설 이용 <u>자</u> 의 준수사항) 군 매점 등 <u>복지시설 이용자</u> 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삭 제>
제17조(군인가족의 날) ① (생 략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<u>행사 등 사업의 실시</u> 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	제17조(군인가족의 날) ① (생 략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<u>행사 등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(전문위원 김 성 완)

6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「선원법」

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